|  |  |
| --- | --- |
| 하남성 인민위원회**노동-사회보훈국**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독립 - 자유 - 행복** |
|  호: /SLĐTBXH-VLATLĐ |   |
|   | 하남, 년 월 일 |

**계획서**

**2025년 한국 경상북도 봉화군 및 전라북도 고창군으로 계절근로자로서 하남성의 근로자들을 파견하는 협의서를 이행에 대해서**

2024년 2월 7일에 체결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하남성 노동보훈사회국 및 대한민국 경상북도 봉화군 정권 간의 ‘한국으로 계절 근로자 파견 및 도입 협의서’ 및 2024년 3월 18일에 체결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하남성 노동-사회보훈국 및 대한민국 전라북도 고창군 정권 간의 ‘한국으로 계절 근로자 파견 및 도입 협의서’에 따라, 하남성 노동-사회보훈국은 2025년 이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행한다.

**I. 목적 및 요구 사항**

**1.** **목적**

봉화군, 고창군, 허남성 간 문화, 사회, 경제, 투자 분야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서로 지원을 강화한다.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근로자들이 한국의 첨단 기술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특히 농업 분야에서의 생산과 경영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두 지역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2. 요구 사항**

양국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절근로자를 한국으로 파견 및 도입 협의서를 실행해야 한다.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행되어야 하며 선발된 근로자의 양적과 질적 및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II. 내용 및 실행 절차**

**1. 선발 대상**

**가.** 하남성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시민, 법적 능력이 완전한 사람, 외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이다.

**나.** 연령: 30세 이상 50세 미만.

**다.** 성별: 남녀.

**라.** 직업: 농사.

**마.** 전과자, 불법체류자, 전염병 환자, 신경질환, 심혈관 질환, 혈압, 당뇨병, 감각질환, 골관절 질환, 신장결석, 담석 등 내과질환을 걸린 사람, 마약류를 사용하는 사람, 임산부 또는 갓 출산하여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사람, 법률에 따라 출국이 금지되거나 일시적으로 출국이 연기되는 사람을 선발하지 않는다.

2025년 이전에 계절별 근로하면서 성실하지 않거나 정직하지 않고 농장주로부터 불만을 받은 경우의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 또한, 부모, 형제, 자매가 현재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 선발 요구 사항**

**가. 모집 인원 및 기간:** 선발 인원은 약 1,000명으로, 농장주와 각 군의 추천에 따라 인원을 포함한다. (선발 인원의 수 및 선발 차수가 각 군과 소속 부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협의되여 결정된다).

**나. 업종 및 업무:** 멜론, 고구마, 고추, 수박, 감자, 채소 등 농작물의 재배, 수확 및 관리.

**다. 근무지:** 대한민국 경상북도 봉화군 및 전라북도 고창군.

**라. 서류 접수 기간:** 2025년에는 근로자의 신청서를 두 차례에 걸쳐 접수한다. (1차: 2024년 12월25일 및 2차: 2025년 II 분기 예정).

**마. 한국에서의 근무 기간:** 3~5개월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최대 3 개월 동안 연장될 경우, 군에서는 별도로 공문을 통해 통보할 것이다).

**3. 수행 절차**

- 근로자가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본 협의서 및 본 계획을 광범위하게 홍보한다.

- 서류 접수 시간 및 장소를 공지하고 접수를 진행한다.

- 채용 대상자, 채용 조건 및 각 회차별 요구에 따라1차 선발을 진행한다 (재추천 근로자와 최초 지원 근로자를 포함한다).

- 전체 명단을 종합하여 보훈국 지도자에 보고하고 고용주가 재입국 추천된 근로자의 명단 및 서류를 봉화군과 고창군으로 전달한다 (군의 요청에 따라 및 재선발).

- 지원자 명단을 종합하여 소속 부서의 지도부에 보고하고,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신규 지원자의 전체 명단 및 서류를 봉화군과 고창군으로 송부하여 선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출국 전에 하남성의 근로자는 한국인과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한 대화를 배우고 출국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으며 봉화군과 고창군에 대한 정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된 양국의 법률, (불법 체류) 도주 때 불리, 계약 기간 동안 성실하고 정직하게 근무할 경우 재입국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점에 대해 잘 파악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관련 기관에서 출국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건강검진, 비자 신청, 해외 근로 허가, 여행자 보험 등).

- 근로자 및 근로자의 가족에게 한국에서 도주하지 않을 것과 계약 종료 후 제때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서약하는 보증 약정서를 작성도록 한다.

- 근로자와의 연락 채널을 구축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귀국하도록 요구한다. 만약 근로자가 도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친척이 군의 정권과 출두하고 자발적으로 귀국하며 보증 약정서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 근로자의 가족들에게 촉구한다.

- 봉화군 및 고창군의 정권, 한국에서 베트남의 대표기관과 협력하여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 근로자를 모시고 인계한다.

**III. 이행 경비 출처**

2025년 예산안에 따라 하남성취업센터를 위한 국가 예산이 편성된 경비 출처.

**IV. 실행 조직**

**1. 노동-사회보훈국**

- 고용노동안전부서에담당 분야에 대해 국가관리부서장에게 자문을 제공한다.

- 성의 취업지원센터는 대한민국의 봉화군 및 고창군으로 계절 근로자를 파견하는 협의서에 작성된 노동보훈사회국의 업무뿐만 아니라 본 계획의II항 3번에 명시된 절차를 직접 조직 및 실행한다. 근로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근로지에서 이탈하거나,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거나 주재국의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망한 경우 이를 관련 기관 및 각 현, 도시의 인민위원회에 통보하여 신속한 지시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출입국 절차 및 한국에서 계절 근로자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경찰청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주관적으로 대처한다. 한국으로 계절 근로자를 파견하는 합의서 이행과 관련하여 2022년 6월 24일 자 노동보훈사회부 호 2188/LĐTBXH-QLLĐNN공문 및 2023년 3월 16일 자 호 928/LĐTBXH-QLLĐNN공문에 따른 보고 체제를 준수하여 실행한다.

- 현, 도시의 노동보훈사회부서는 관련 기관 및 리, 동, 도읍과 협력하여 협의서와 본 계획을 통보한다. 근로자들이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계약 완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귀국하도록 독려하며 근로지 이탈이나 한국 내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법무부 제안**

근로자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규정에 따라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안내 및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3. 성 경찰 제안**

- 출국 전에 근로자가 여권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안내 및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 노동보훈사회국과 협력하여 법을 위반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협력 협정을 활용하여 근로자를 한국 농업 부문의 계절근무에 파견하는 조직 및 개인을 조사하고 처리한다.

**4. 재정부 제안**

- 현행 규정에 따라 경비 절차 및 최종 자금 정산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5. 정보통신부**

- 지역 신문 및 라디오 기관(지방 방송국, 하남 신문)에 지방 취업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방송공영와 방송 시스템 통해 선전을 조직하도록 지시하고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 조건 및 표준을 전달한다.

**6. 사회복지정책은행 제안\_하남 지점**

규정에 따라 대출이 필요하고 대출 자격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안내하고 조건을 조성한다.

**7. 시, 군, 현의 인민위원회 요청**

관련 부서, 기관 및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한국에서의 계절 근로자 파견 협력 협약 및 관련 문서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지역 내 취약계층 및 빈곤 가구 소속 근로자들이 조건에 부합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합니다.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계약 종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귀국하며, 이를 통해 하남성의 투자 환경, 국가 이미지, 주민들의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있을 경우)를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근로자의 경력 증명, 농업 경험, 이력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확인하며, 확인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아울러, 불법 체류 중인 친척이 있는 근로자, 불법 체류 위험성이 높거나 잠재적으로 위험 요소가 있는 근로자들을 신속히 도에 위치한 고용서비스센터 및 노동·사회복지부에 통보하여, 두 나라의 법률 및 장기적인 안정성을 준수하면서 프로그램이 적절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8. 성 조국전선위원회, 여성 연합회, 농민회, 하남 청년 단체, 성 의 제안**

시, 리, 현에 있는 조국 전선 위원회, 여성 연합회, 농민회, 청년 단체는 농업 분야에서 해외 취업을 희망하고 자격을 갖춘 자녀가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계절 근로자로 일하기 위한 채용에 참여하도록 선전하고 독려하며,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무단 이탈하거나 불법 체류하지 않고, 계약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귀국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9. 근로자에 대한 제안**

- 한국에서 계절 근로자로 일할 근로자는 체결된 협의서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근로자는 각종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 한국어 교육비, 교육비용

+ 한국으로 출국하는 비용: 여권 발급, 비자 신청, 건강검진, 범죄경력증명서, 공증 번역, 국제 여행 보험, 유니폼, 사진 촬영, 서류 작성, 항공권 등.

- 모든 서류와 관련된 비용을 규정에 맞게 완성해야 한다.

- 서명한 근로계약을 정확히 이행하고 한국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종료 후 정해진 시간 내에 귀국할 것을 약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 법률, 베트만 법률 및 체결된 근로계약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 위 내용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봉화군 및 전라북도 고창군으로 계절 근로자를 파견하기 위해 협의서를 실행하는 계획이다. 노동-사회보훈국은 관련 부서, 단위 및 각 현.군.시 인민위원회에 위에서 언급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 성의 취업 지원 센터 및 노동사회보훈국 산하의 관련부서들에게, 배정된 업무의 내용이 확보한 일정과 품질을 준수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어려움은 노동-사회보훈국에 보고하여 신속히 지시를 받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 --- | --- |
| **수신:**- 노동보훈사회국 (보고용);- 도 인민위원회(보고용);- 청국장 및 부국장;- 각 도청 부서, 기관, 단체 (협조용);- 각 군.시.구 인민위원회(협조용);- 군·시·구 노동사회보훈 및 고용안전부;- 도 취업 서비스 센터;- 보관: 사무국, 고용안전부. | **국장 대행****부국장** **LE THI THU HANG** |